

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

채권자 〇〇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◇◇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

피보전권리의 내용 20○○. ○. ○. 약정에 의한 선박인도청구권

목적물의 가격 ㅇㅇㅇ원

신 청 취 지

- 1.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 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- 2. 집행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 선박을 ○○항의 집행관이 명하는 장소에 정박시키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보관을 명할 수있다.
- 3. 채무자는 위 선박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당사자들의 지위

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선박을 매수한 사람이고 채무자는 매도인으로서 목록 선박의 소유자입니다.



2. 채무자의 선박인도의무

채무자는 2000. ○. ○.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선박을 2000. ○. ○○.까지 인도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채무자는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위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채무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위 선박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.

3. 보전의 필요성

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상대로 위 선박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놓았으나 채무자가 위 선박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제3자의 점유하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는 위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염려가 있어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4. 담보제공

한편, 이 사건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,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 명 방 법

1. 소갑 제1호증	계약서
------------	-----

1. 소갑 제2호증 소장사본

1. 소갑 제3호증 최고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소명방법 각 1통

1. 정박증명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채권자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선박의 표시

1. 선박의 종류 및 명칭 기선 〇〇호

1. 선 질 철강 및 목조

1. 총톤수 000톤

1. 순톤수 000톤

1. 기관종류 및 수 디젤기관○개

1. 추진기의 종류 및 수 나선추진기 \bigcirc 개

1. 진수연월일 20 ○ ○ . ○ .

1. 소유자 ◇◇◇

1. 선장의 이름 ◆◆◆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. 끝.

제출법원	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		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(목록 5부정 도 첨부)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						
불복절차 및 기간	 (채권자) ・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1조 제2항) ・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(민사소송법 제444조) (채무자) ・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3조), 본 안의 제소명령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7조) 등 ・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 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・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.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 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. 						
비 용	·인지액 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			

※ 집행절차

가처분신청	→ 2~3일후	담보제공명령서 수령(공탁명령)	→ 5일내	보증보험사와 지급 보증위탁계약체결 ※ 지참서류등 1. 가처분신청서사본 2. 주민등록표등본 3. 담보제공명령서 4. 인감증명 및 도장 ※ 온라인계약체결가능	→
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 에 제출 (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)	→	결정문 2부 수령 (채권자, 채무자각1부)	→	1.선박이 정류·정 박중인 곳의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 (집행관실에 비치된 집 행위임장 및 약도작성) 2.수수료 납부 및 부배정 3.담당부 집행일시 지정	→



- 1. 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
- 2. 집행관 공시서부착
- 3. 집행관 집행조서작성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